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관
람

기관
의
장

제1840호 2024. 5. 13.(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3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34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 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3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3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3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1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3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5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4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 5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41호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6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42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43호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6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44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6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45호	인천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조례—————8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4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8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47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 영양관리 조례—————9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48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9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149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98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7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103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7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104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75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120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76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125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9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129
-------------------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89호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열람·공고- 13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5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1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발의하는 의안”을 “의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위원회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청장”을 “구청장 및 의원 등”으로 한다.

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고,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 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 등의 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협의회 조직과 기능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협회의 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 2.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 3.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 5. 그 밖에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앞에 “제2장 협의회 조직과 기능”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150명”을 “80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하되”를 “하되 두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 선정절차 및 위원 선출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제2항 중 “30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

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의장단을 보좌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제1항 중 “5개”를 “3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명”을 “25명”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연”을 “반기별”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안전 사전승인 및 결과보고) ① 운영위원장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부치는 안전에 대해서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의장단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총회: 구청장, 주민대표, 기업대표
2. 운영위원회: 주민대표, 기업대표

② 의장단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장단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 운영위원회에 그 안전을 부치지 않는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처리 후 10일 이내에 의장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

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구 별	명 칭	관 할 구 역
서 구	백석동	- 백석동 일원 - 당하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백석동 80, 80-11, 80-16, 80-52, 81-10, 산33-6~7, 산34-2, 산34-7~9, 산34-11~12
	시천동	시천동 일원
	검암동	- 검암동 일원 - 2003. 7.29 경서동에서 일부경정 편입지역 포함 - 경서동 1, 1-1, 1-3~5, 1-21, 1-26~29, 1-31, 1-33, 1-47, 1-50, 1-55~64, 2-4~5, 2-7, 2-9~12, 3-46~47, 5-37~39, 6-1~3, 6-5~14, 6-18~21, 6-23~37, 7-2~5, 8-4~5, 382-3, 산1-1, 산18-8 - 2003. 7.29 공촌동에서 일부경정 편입지역 포함 - 공촌동 47-5~6, 49, 49-6, 50, 50-1~3, 51-1~11, 5-13~14, 51-17~39, 51-41~42, 51-44~49, 51-51, 51-53~8, 51-60~67, 51-71, 51-75~87, 51-95~97, 51-99~101, 51-104, 51-110~114, 52-1~16, 53-1~9, 54-1~4, 54-6~9, 55-1~7, 55-10, 55-12~13, 56, 56-1, 56-3~5, 57, 57-1~12, 57-15~16, 58, 58-1, 293-2~3, 293-5~7, 294-1~3, 산36-11~12 - 2003. 7.29 연희동에서 일부경정 편입지역 포함 - 연희동 73-1, 73-5, 555-15~17
	경서동	경서동 일원 - 청라동으로 종전의 경서동 일부 편입지역 제외 청라국제도시 내 경서동 전부, 경서동 1016, 1016-1, 496-10, 513-2, 513-3, 513-4, 513-5, 513, 514-1, 514-2, 514-3, 514-4, 515-1, 515-2, 515-3, 515-4, 515-5, 515, 516-11, 516-12, 516-13, 516-17, 516-2, 516-3, 516-6, 516-7, 516-9, 517-11, 517-12, 517-13, 517-14, 517-26, 517-29, 517-30, 517-31, 517-32, 517-7, 517-9, 518, 518-17, 518-32, 518-43, 518-44, 518-65, 518-68, 518-70, 518-75, 518-76, 519-20, 519-21, 519-26, 519-32, 519-33, 519-37, 520-22, 520-30, 520-31, 520, 522-28, 522-51, 522-52, 522-53, 522-66, 522-68, 526-1, 526-4, 527-1, 527-4, 570, 575, 577-2, 594-1, 594, 595, 595-1, 595-2, 595-4, 673-11, 673-12, 673-15, 673-16, 673-17, 673-18, 673-19, 673-1, 673-20, 673-21, 673-22, 673-23, 673-24, 673-25, 673-26, 673-27, 673-28, 673-3, 673-45, 673-46, 673-47, 673-48, 673-49, 673-4, 673-50, 673-51, 673-52, 673-53, 673-54, 673-55, 673-56, 673-57, 673-5, 673-61, 673-62, 673-63, 673-64, 673-65, 673-66, 673-67, 673-68, 673-69, 673-6, 673-71, 673-72, 673-73, 673-74, 673-75, 673-76, 673-77, 674-11, 674-13, 674-14, 674-15, 674-16, 674-2, 674, 675, 676, 677-1, 677, 712, 713, 714, 715, 716-1, 716-2, 716, 717, 991, 991-1, 991-2, 992, 산251-10, 산257-10, 산257-11, 산257-2, 산257-3, 산257-4, 산257-5, 산257-6, 산257-7, 산257-8, 산257-9

구 별	명 칭	관 할 구 역
	공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촌동 일원 - 2003. 7.29 검암동으로 일부경정 편입지역 제외 공촌동 47-5~6, 49, 49-6, 50, 50-1~13, 51-1~11, 51-13~14, 51-17~39, 51-41~42, 51-44~49, 51-51, 51-53~58, 51-60~67, 51-71, 51-75~87, 51-95~97, 51-99~101, 51-104, 51-110~114, 52-1~16, 53-1~9, 54-1~4, 54-6~9, 55-1~7, 55-10, 55-12~13, 56, 56-1, 56-3~5, 57, 57-1~12, 57-15~16, 58, 58-1, 293-2~3, 29-5~7, 294-1~3, 산 36-11~12
	연희동	연희동 일원 - 청라동으로 종전의 연희동 일부 편입지역 제외 청라국제도시 내 연희동, 연희동 432-19, 578-1, 578, 579-1, 618-2, 619-1, 620-1, 621-14, 621-2, 621-3, 621-6, 621-7, 621-8, 621-9, 810-11, 810-5, 828-1, 828-2, 828-3, 829-1, 829-2, 830-1, 830-2, 831, 832, 833, 834, 산139-14, 산139-18, 산139-23, 산139-24, 산139-25, 산148-12, 산148-20
	심곡동	심곡동 일원
	청라동	청라동 일원 - 종전의 연희동, 경서동, 가정동, 원창동 일부 편입지역 포함 청라국제도시 내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 전부, 경서동 1016, 1016-1, 496-10, 513-2, 513-3, 513-4, 513-5, 513, 514-1, 514-2, 514-3, 514-4, 515-1, 515-2, 515-3, 515-4, 515-5, 515, 516-11, 516-12, 516-13, 516-17, 516-2, 516-3, 516-6, 516-7, 516-9, 517-11, 517-12, 517-13, 517-14, 517-26, 517-29, 517-30, 517-31, 517-32, 517-7, 517-9, 518, 518-17, 518-32, 518-43, 518-44, 518-65, 518-68, 518-70, 518-75, 518-76, 519-20, 519-21, 519-26, 519-32, 519-33, 519-37, 520-22, 520-30, 520-31, 520, 522-28, 522-51, 522-52, 522-53, 522-66, 522-68, 526-1, 526-4, 527-1, 527-4, 570, 575, 577-2, 594-1, 594, 595, 595-1, 595-2, 595-4, 673-11, 673-12, 673-15, 673-16, 673-17, 673-18, 673-19, 673-1, 673-20, 673-21, 673-22, 673-23, 673-24, 673-25, 673-26, 673-27, 673-28, 673-3, 673-45, 673-46, 673-47, 673-48, 673-49, 673-4, 673-50, 673-51, 673-52, 673-53, 673-54, 673-55, 673-56, 673-57, 673-5, 673-61, 673-62, 673-63, 673-64, 673-65, 673-66, 673-67, 673-68, 673-69, 673-6, 673-71, 673-72, 673-73, 673-74, 673-75, 673-76, 673-77, 674-11, 674-13, 674-14, 674-15, 674-16, 674-2, 674, 675, 676, 677-1, 677, 712, 713, 714, 715, 716-1, 716-2, 716, 717, 991, 991-1, 991-2, 992, 산251-10, 산257-10, 산257-11, 산257-2, 산257-3, 산257-4, 산257-5, 산257-6, 산257-7, 산257-8, 산257-9 연희동 432-19, 578-1, 578, 579-1, 618-2, 619-1, 620-1, 621-14,

	621-2, 621-3, 621-6, 621-7, 621-8, 621-9, 810-11, 810-5, 828-1, 828-2, 828-3, 829-1, 829-2, 830-1, 830-2, 831, 832, 833, 834, 산139-14, 산139-18, 산139-23, 산139-24, 산139-25, 산148-12, 산148-20 가정동 58-27,58-29,58-30, 58-31, 58-33, 58-35, 58-39, 58-40,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가정동	가정동 일원 - 청라동으로 종전의 가정동 일부 편입지역 제외 가정동 58-27,58-29,58-30, 58-31, 58-33, 58-35, 58-39, 58-40,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신현동	신현동 일원 - 가정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가정동 120-13, 120-22~26, 120-35, 120-46~47, 120-69~71, 120-74~76, 120-78, 120-84, 120-90, 120-92, 120-95, 120-98, 120-100, 120-102, 120-104, 120-107, 120-132, 120-134, 120-144, 120-146, 120-149~152, 120-155, 120-157~160, 120-163, 120-173, 120-176~180, 120-182~183, 120-185~190, 203-2, 204-5~6, 204-8~11, 204-14~15, 204-43, 204-64~67, 204-72~75, 204-87~88, 204-91, 204-104, 204-112, 204-114~115, 204-124~131, 204-138~139, 204-141~142, 204-145~148, 204-150, 204-152~154, 204-156~159, 204-161~162, 204-164~168, 204-173~188, 469-5~9, 469-12~13, 470, 572-1, 593-5, 120-91, 120-106, 120-194~197, 203-24~25, 204-69, 204-99, 204-189, 469-15~17 - 원창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원창동 1, 1-1~23, 2-19, 2-23~24, 2-32~34, 2-37, 2-39~41, 2-62~63, 2-65~67, 2-74~75, 67, 67-5, 68, 68-3, 197-1, 197-5~6, 산4-2, 산4-4, 산4-7~8, 산4-10, 산4-12, 산5-1~2, 산5-5~7, 2-77, 2-79, 65-4, 69-5, 197-7, 197-9, 산4-15, 산4-18, 산5-8, 산6-4, 산9-20, 산18
석남동	석남동 일원
원창동	원창동 일원 - 청라동으로 종전의 원창동 일부 편입지역 제외 청라국제도시 내 원창동
가좌동	가좌동 일원

마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전동 일원 - 왕길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마전동 625, 660-2, 660-44, 661-2~3, 662-5, 663-1~4, 695-2~7, 696-2~6, 696-8~10, 698-7, 698-22, 698-31, 699-14, 735-5, 740-3, 산160-1, 산156-2~3, 산157-4, 산158-5 - 왕길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왕길동 219-18 - 당하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당하동 925-21~22, 925-24, 1012-1, 1015-3, 1018-1 - 불로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불로동 725-8~9, 751-1 - 당하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마전동 498, 498-1, 499-2, 541-1~2, 545-14, 545-18~24, 546-7 547, 547-1~11, 547-13~16, 548, 548-1, 549, 550-1~5, 553-1 555-1~2, 556, 556-1~2, 557, 558, 559-8~10, 559-12~14, 559-18, 559-23, 559-26~27, 559-34, 559-42, 582-10~11, 582-18 582-21~22, 582-24, 582-26, 582-30, 609, 609-1~9, 610, 615, 615-1, 616-2, 616-4~5, 617-3~4, 617-6~7, 710-1, 713-10, 715~717, 산170-18~19, 산171-1, 산171-3~4, 산171-7, 산172 산172-1~3, 산181-2~4, 산181-10~13, 산181-16, 산182, 산183-1~2, 산184-1~2, 산185-1~3 - 당하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169필지) 마전동 518-7, 520-5, 521-1~5, 521-7,~9, 521-11, 521-13~14, 521-21~22, 521-26, 522-1~5, 523, 524, 524-1~3, 524-5, 524-7, 524-9, 524-11, 524-14~16, 524-18~20, 525-1~3, 526, 526-1~2, 526-4, 526-6~7, 527, 527-1, 529, 529-1~2, 529-4, 529-6~7, 529-9~10, 530, 530-1, 531, 531-1~2, 532, 532-1~6, 533, 533-1, 534, 534-1~8, 535-1, 535-3~6, 536-1, 536-3~5, 537, 537-1, 538-1, 539, 540, 540-1~7, 540-9~11, 541, 542, 543, 543-1, 544, 544-1~3, 545-1~4, 545-6~13, 545-15~17, 545-27~29, 546-1~2, 546-5~6, 710, 710-2~3, 711, 712, 산181-1, 산181-14, 산181-17, 산196-5, 산196-15, 산196-17. 산196-20, 산196-23, 산197-1, 산197-6~9, 산198, 산199-1, 산199-3, 산199-5~6, 산199-9, 산200, 산203-1, 산203-3~5, 산204-1~2, 산204-4, 499-3(일부), 515-32(일부), 710-4(일부), 산180-5(일부), 산185-9(일부), 산194-4(일부)
-----	--

당하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하동 일원 - 원당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83개 필지) - 원당동 457-1, 461, 461-1, 461-2, 462, 462-1, 462-2, 462-3, 462-4, 462-5, 462-6, 462-7, 462-8, 462-9, 463, 463-4 ,463-5 470, 470-1, 470-3, 481, 481-2, 481-3, 481-6, 481-7, 481-8 481-9, 482, 482-1, 482-2, 482-3, 482-4, 482-5, 483-1, 483-2 483-3, 483-4, 483-5, 483-6, 483-9, 483-10, 483-11, 483-12 483-13, 485-2, 485-3, 485-7, 485-8, 485-9, 485-10, 485-11 486-21, 486-27, 508, 508-1, 508-2, 508-3, 539-4, 539-5 539-6, 539-7, 539-11, 539-12, 539-13, 539-14, 539-15, 539-25 539-26, 539-27, 539-28, 457, 457-2, 463-1, 470-2, 481-5 483-7, 485-1, 486-20, 486-22, 509-5, 539-2, 539-16, 539-29 - 원당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84개 필지) 당하동 188-8, 188-9, 188-10, 188-11, 279-4, 281-5, 313-2, 314-2, 314-8, 314-9, 314-10, 314-11, 314-12, 315-4, 315-8, 319-4, 319-7, 394-1, 394-2, 394-3, 395-1, 397-2, 397-4 401, 401-1, 401-2 ,401-6, 401-7, 401-8, 405-1, 405-2, 407-6 407-7, 408-2, 409-2, 409-5, 412, 412-1, 412-2, 413, 413-1, 413-2, 413-3, 413-4, 414, 415-6, 964-9, 981, 188-6, 188-12 188-15, 279-3, 280-6, 281, 281-11, 313-1, 313-4, 313-5, 314-5, 314-7, 315-5, 315-7, 319-3, 319-6, 320-3, 320-4 340-3, 340-5, 341-3, 341-4, 383-1, 383-2, 388-1, 388-3 401-5, 410-7, 414-1, 414-2, 414-3, 415, 415-1, 416-1,964-7 964-24 - 마전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169필지) 마전동 518-7, 520-5, 521-1~5, 521-7~9, 521-11, 521-13~14, 521-21~22, 521-26, 522-1~5, 523, 524, 524-1~3, 524-5, 524-7, 524-9, 524-11, 524-14~16, 524-18~20, 525-1~3, 526, 526-1~2, 526-4, 526-6~7, 527, 527-1, 529, 529-1~2, 529-4, 529-6~7, 529-9~10, 530, 530-1, 531, 531-1~2, 532, 532-1~6, 533, 533-1, 534, 534-1~8, 535-1, 535-3~6, 536-1, 536-3~5, 537, 537-1, 538-1, 539, 540, 540-1~7, 540-9~11, 541, 542, 543, 543-1, 544, 544-1~3, 545-1~4, 545-6~13, 545-15~17, 545-27~29, 546-1~2, 546-5~6, 710, 710-2~3, 711, 712, 산181-1, 산181-14, 산181-17, 산196-5, 산196-15, 산196-17. 산196-20, 산196-23, 산197-1, 산197-6~9, 산198, 산199-1, 산199-3, 산199-5~6, 산199-9, 산200, 산203-1, 산203-3~5, 산204-1~2, 산204-4, 499-3(일부), 515-32(일부), 710-4(일부), 산180-5(일부), 산185-9(일부), 산194-4(일부)
-----	--

원당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당동 일원 - 당하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84개 필지) 당하동 188-8, 188-9, 188-10, 188-11, 279-4, 281-5, 313-2, 314-2, 314-8, 314-9, 314-10, 314-11, 314-12, 315-4, 315-8, 319-4, 319-7, 394-1, 394-2, 394-3, 395-1, 397-2, 397-4 401, 401-1, 401-2 ,401-6, 401-7, 401-8, 405-1, 405-2, 407-6 407-7, 408-2, 409-2, 409-5, 412, 412-1, 412-2, 413, 413-1, 413-2, 413-3, 413-4, 414, 415-6, 964-9, 981, 188-6, 188-12 188-15, 279-3, 280-6, 281, 281-11, 313-1, 313-4, 313-5, 314-5, 314-7, 315-5, 315-7, 319-3, 319-6, 320-3, 320-4 340-3, 340-5, 341-3, 341-4, 383-1, 383-2, 388-1, 388-3 401-5, 410-7, 414-1, 414-2, 414-3, 415, 415-1, 416-1,964-7 964-24 - 당하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83개 필지) 원당동 457-1, 461, 461-1, 461-2, 462, 462-1, 462-2, 462-3, 462-4, 462-5, 462-6, 462-7, 462-8, 462-9, 463, 463-4 ,463-5 470, 470-1, 470-3, 481, 481-2, 481-3, 481-6, 481-7, 481-8 481-9, 482, 482-1, 482-2, 482-3, 482-4, 482-5, 483-1, 483-2 483-3, 483-4, 483-5, 483-6, 483-9, 483-10, 483-11, 483-12 483-13, 485-2, 485-3, 485-7, 485-8, 485-9, 485-10, 485-11 486-21, 486-27, 508, 508-1, 508-2, 508-3, 539-4, 539-5 539-6, 539-7, 539-11, 539-12, 539-13, 539-14, 539-15, 539-25 539-26, 539-27, 539-28, 457, 457-2, 463-1, 470-2, 481-5 483-7, 485-1, 486-20, 486-22, 509-5, 539-2, 539-16, 539-29 - 블로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137개 필지) 원당동 627-1~3, 627-9(일부), 628(일부), 629-1~2, 630, 631, 631-1~4, 632, 633, 634-1~6, 635-1~2, 636-1~2, 636-3(일부), 636-4~6, 636-9(일부), 636-10~13, 636-14~16(일부), 637-1, 637-3, 637-4(일부), 637-6(일부), 640-7~8(일부), 640-12(일부), 640-32(일부), 649(일부), 650, 651-1, 651-3~37, 652(일부), 653(일부), 782-6(일부), 783-3(일부), 784(일부), 784-1~2(일부), 793, 산32, 산33, 산34(일부), 산35(일부), 산40-7(일부), 산102-6(일부), 산103-7(일부), 산105-1(일부), 산106-1~3(일부), 산107-1~2, 산108-1, 산109-1~2, 산110-1, 산111-1~3, 산111-5~6,
-----	---

	<p>산111-11, 산111-12(일부), 산111-13~24, 산111-31, 산111-32~33(일부), 산111-38~39, 산111-42, 산111-43(일부), 산111-45(일부), 산111-47(일부), 산136</p>
불로동	<p>- 불로동 일원 - 마전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불로동 725-8~9, 751-1</p> <p>- 원당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137개 필지) 원당동 627-1~3, 627-9(일부), 628(일부), 629-1~2, 630, 631, 631-1~4, 632, 633, 634-1~6, 635-1~2, 636-1~2, 636-3(일부), 636-4~6, 636-9(일부), 636-10~13, 636-14~16(일부), 637-1, 637-3, 637-4(일부), 637-6(일부), 640-7~8(일부), 640-12(일부), 640-32(일부), 649(일부), 650, 651-1, 651-3~37, 652(일부), 653(일부), 782-6(일부), 783-3(일부), 784(일부), 784-1~2(일부), 793, 산32, 산33, 산34(일부), 산35(일부), 산40-7(일부), 산102-6(일부), 산103-7(일부), 산105-1(일부), 산106-1~3(일부), 산107-1~2, 산108-1, 산109-1~2, 산110-1, 산111-1~3, 산111-5~6, 산111-11, 산111-12(일부), 산111-13~24, 산111-31, 산111-32~33(일부), 산111-38~39, 산111-42, 산111-43(일부), 산111-45(일부), 산111-47(일부), 산136</p>
대곡동	대곡동 일원
금곡동	금곡동 일원
오류동	<p>- 오류동 일원 - 왕길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오류동 767-2, 768-2, 768-4, 768-7, 768-10, 865-9</p> <p>- 왕길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왕길동 481-9~11, 482-1~2, 482-4~5, 482-8, 482-10, 483-1~4, 484, 484-1, 485-1~2, 485-5, 510-5~6, 510-12~13, 515-2~3, 519-1~2, 520-1~16, 521-1~2, 521-4~5, 521-10, 536-2~3, 536-9, 536-15, 536-19~20, 536-22, 537-1~2, 537-5, 538, 538-1, 539-1~7, 540, 541, 541-1~5, 541-7, 626, 626-73~74, 627, 628</p>
왕길동	<p>- 왕길동 일원 - 마전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마전동 625, 660-2, 660-44, 661-2~3, 662-5, 663-1~4, 695-2~7, 696-2~6, 696-8~10, 698-7, 698-22, 698-31, 699-14, 735-5, 740-3, 산160-1, 산156-2~3, 산157-4, 산158-5,</p> <p>- 오류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오류동 767-2, 768-2, 768-4, 768-7, 768-10, 865-9</p> <p>- 오류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왕길동 481-9~11, 482-1~2, 482-4~5, 482-8, 482-10, 483-1~4,</p>

		484, 484-1, 485-1~2, 485-5, 510-5~6, 510-12~13, 515-2~3, 519-1~2, 520-1~16, 521-1~2, 521-4~5, 521-10, 536-2~3, 536-9, 536-15, 536-19~20, 536-22, 537-1~2, 537-5, 538, 538-1, 539-1~7, 540, 541, 541-1~5, 541-7, 626, 626-73~74, 627, 628
--	--	--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표(제2조 관련)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서구	계	23		
	백석동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1	검암경서동	백석동,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일원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	1	연희동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 일원 (단, 가정1동에 편입된 인천가정2 공공택지구역 내 연희동 및 심곡동 일원 제외)
	청라동	3	청라1동	- 청라국제도시 내 봉수대로 기준 서측, 중봉대로 기준 동측, 청라동 일원 청라동 1-1060, 1-1061, 1-1063, 1-1064, 1-1074, 1-1114, 1-1123, 1-1125, 1-1130, 1-1132, 1-1145, 1-1152, 1-1155, 1-1163 ~ 1-1165, 1-1177, 1-1179, 1-1190, 1-1203, 1-1206, 1-1206, 1-1260, 1-1263 ~ 1-1265, 1-1304, 1-1305, 1-1311, 1-1327, 1-1328, 1-1330, 1-1334 ~ 1-1337, 1-1739, 4-1, 4-5, 101-14, 112-33, 112-34, 116-2 ~ 116-10, 117-1 ~ 117-24, 118-1 ~ 118-9, 119-1 ~ 119-15, 120-1 ~ 120-9, 121-1 ~ 121-24, 122-1 ~ 122-9, 123-1 ~ 123-16, 124-1 ~ 124-9, 125-1 ~ 125-7, 126-1 ~ 126-8, 127-1 ~ 127-12, 128-1 ~ 128-8, 129-1 ~ 129-12, 130-1 ~ 130-8, 131-2 ~ 131-29, 132-1 ~ 132-7, 133-1 ~ 133-32, 134-1 ~ 134-10, 135-1 ~ 135-4, 136-1 ~ 136-17, 137-1 ~ 137-10, 138-23, 138-25, 160-1 ~ 160-5, 161-1 ~ 161-3, 162-1 ~ 162-26, 163-1 ~ 163-3, 164-1 ~ 164-3, 165-1 ~ 165-18, 166-1 ~ 166-5, 167-1 ~ 167-33, 168-1 ~ 168-4, 169-1 ~ 169-11, 170-1 ~ 170-17, 171-1 ~ 171-24, 172-2 ~ 172-9, 172-13, 185-1 ~ 185-5, 186-1 ~ 186-17, 187-1 ~ 187-6, 188-1 ~ 188-5, 189-1 ~ 189-17, 190-1 ~ 190-6, 191-1 ~ 191-6, 192-1 ~ 192-4,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청라1동	193-1 ~193-4, 202-1 ~ 202-5, 202-7 ~ 202-9, 202-12, 202-14 ~ 202-16, 203 ~ 203-3, 203-5, 204-1 ~ 204-6, 204-8 ~ 204-10, 205-1 ~ 205-5, 206-2, 206-4, 207-1 ~ 207-5, 207-7
			청라2동	- 청라국제도시 내 중봉대로 기준 서측, 청라대로 기준 동측 청라동 일원 청라동 1-622 ~ 1-634, 1-668, 1-671, 1-733, 1-787 ~ 1-795, 1-797, 1-801, 1-857 ~ 1-868, 1-937~ 1-949, 1-952, 1-953, 1-961~ 1-966, 1-1048, 1-1051, 1-1052, 1-1072, 1-1087, 1-1096 ~ 1-1121, 1-1128, 1-1129, 1-1208 ~ 1-1215, 1-1217, 1-1218, 1-1223 ~ 1-1245, 1-1247 ~ 1-1255, 1-1266 ~ 1-1273, 1-1277, 1-1309, 1-1332, 1-1338~ 1-1353, 1-1355, 1-1358, 1-1360, 9-1 ~ 9-91, 9-93, 9-95, 9-96, 9-98 ~ 9-102, 9-104, 9-106, 9-107 ~ 9-138, 9-140, 9-142, 9-144, 9-146, 10-1 ~ 10-3, 10-5, 10-6, 101-12, 101-13, 106-2, 106-3, 106-5, 106-6, 107-1~ 107-5, 108-1 ~ 108-29, 109-1~ 109-11, 109-13 ~109-33,110-1 ~ 110-13, 111-1 ~ 111-38, 111-40 ~ 111-47, 121-1 ~ 121-32, 113-1 ~ 113-5, 113-7 ~ 113-13, 114-1 ~ 114-28, 115-1 ~ 115-7, 139-1 ~ 139-5, 140-1 ~ 140-5, 141-1 ~ 141-13, 142-1 ~ 142-21, 143-1 ~ 143-13, 144-1 ~ 144-28, 145-1 ~ 145-19, 146-1 ~ 146-13, 147-1 ~ 147-19, 148-1 ~ 148-14, 149-1 ~ 149-5, 150-1 ~ 150-6, 151-1 ~ 151-5, 152-1 ~ 152-24, 153-1 ~ 153-5, 154-1 ~ 154-6, 155-1 ~ 155-29, 156-1 ~ 156-5, 157-1 ~ 157-23, 158-1 ~ 158-3, 159-1 ~ 159-5, 173-1 ~ 173-10, 174-1 ~ 174-17, 175-1 ~ 175-14, 176-1 ~ 176-11, 177-1 ~ 177-15, 178-1 ~ 178-10, 179-1 ~ 179-13, 180-1 ~ 180-14, 181-1 ~ 181-14, 182-1 ~ 182-11, 183-1 ~ 183-5, 184-1 ~ 184-4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청라3동	- 청라국제도시 내 청라대로 기준 서측 청라동 일원 청라동 1-3 ~ 1-10, 1-101 ~ 1-266, 1-269 ~ 1-286, 1-289 ~ 1-294, 1-296 ~ 1-580, 1-582 ~ 1-621, 1-635, 1-637 ~ 1-666, 1-669, 1-673, 1-674, 1-676 ~ 1-731, 1-734 ~ 1-786, 1-796, 1-798 ~ 1-800, 1-802 ~ 1-856, 1-869 ~ 1-936, 1-955 ~ 1-960, 1-968 ~ 1-1050, 1-1054 ~ 1-1059, 1-1065~ 1-1071, 1-1075 ~ 1078, 1-1088, 1-1091, 1-1092, 1-1095, 1-1256, 1-1357, 1-1359, 1-1362 ~1-1454, 1-1456 ~ 1-1462, 1-1465 ~ 1-1543, 1-1545 ~ 1597, 1-1599, 1-1601 ~ 1-1877, 1-1879, 1-1880, 1-1882 ~ 1-1934, 1-1936, 2-1, 2-3, 2-4, 2-6 ~ 2-9, 2-12 ~ 2-23, 3-1 ~ 3-37, 3-39 ~ 3-47, 3-49 ~ 3-53, 5-1 ~ 5-17, 5-19 ~5-46, 5-48 ~ 5-74, 6-6 ~ 6-9, 6-11 ~ 6-16, 6-18, 6-23, 7-1 ~ 7-5, 7-9 ~ 7-19, 8-1 ~ 8-124, 8-126 ~ 8-134, 8-137 ~ 8-169, 11-4, 11-6 ~ 11-19, 11-22 ~ 11-51, 11-58 ~ 11-67, 11-69, 11-70, 13-1 ~ 13-26, 14-1 ~ 14-17, 14-19 ~14-23, 15-1 ~ 15-5, 16, 17, 18, 19, 20-1 ~ 20-24, 21-1 ~ 21-10, 22, 23, 24, 25-2 ~ 25-25, 26, 27, 28, 29-1 ~ 27-37, 30, 31, 32, 33, 34, 35, 36-1 ~ 36-30, 37, 38, 39, 40-1 ~ 40-20, 41-1 ~ 41-16, 42, 43, 44, 45, 46-1 ~ 46-53, 47, 48, 49, 50, 51, 52, 53, 54, 55-1 ~ 55-20, 56-1 ~ 56-7, 57-1 ~ 57-6, 58, 59, 60, 61, 62-1 ~ 62-36, 63, 64, 65, 66, 67, 68, 69, 70, 71-1 ~ 71-51, 72, 73, 74, 75, 76-1 ~ 76-7, 77-1 ~ 77-26, 78, 79, 80, 81, 82-1 ~ 82-3, 83-1 ~83-4, 84-1, 84-2, 84-5 ~ 84-13, 85-1 ~ 85-6, 88, 89-3, 89-4, 89-7, 92-1, 92-2, 92-5, 92-8, 92-12, 92-15, 92-18,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청라3동	92-20 ~ 92-29, 95-1 ~ 95-5, 96-1 ~ 96-3, 96-7 ~ 96-22, 97-1 ~ 97-5, 98-3, 99-8, 100-51 ~ 100-82, 100-84 ~ 100-92, 100-94 ~ 100-96, 101-8 ~ 101-10, 102-1 ~ 102-20, 103-1 ~ 103-30, 104-1 ~ 104-80, 104-82 ~ 104-218, 105-1 ~ 105-155, 194-2, 245
	가정동	3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 서곶로 서측, 인천대로 서측 가정동 일원 - 인천가정2 공공택지구역 내 연희동 및 삼곡동 일원 연희동 621-4, 621-10, 621-15~18, 621-22~26 삼곡동 126, 126-2, 127-9~10, 128-3, 129-1~16, 129-18~25, 129-27, 129-38~39, 129-44, 129-46~48, 130~133, 134-2, 231, 231-1~5 서곶로 동측, 경인고속도로 북측 가정동 일원 가정동 430, 545~569, 산105~산108, 산139~산147, 산150, 산156
	신현동 원창동	1	신현원창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석남동	3	석남1동	석남동 산113-1~3, 산117-5, 산118-3, 산119-4, -7, 산124-4, 산125-2, 168, 169, 171,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3, 188, 189, 194, 195, 199~202, 204, 206, 208-1, 213, 215, 219, 221, 229,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74, 475,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석남2동	석남동 산139-1, 223-26, -50, -202, -210, -256, -34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640, 642, 650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석남3동	석남동 산1-1, 산2-1, 산5, 산6, 산10, 산12, 산14, 산15, 산16, 산17-1, 산20-2, 산21, 산23, 산47, 산48, 산49, 산50, 산57, 산58-1, 산59, 산60-1, 산66, 산67, 109-1, 111, 112, 115, 116, 294, 295, -2, 302, 322, 324, 328, 468, 469, 470, 471, 472, 473,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가좌동	4	가좌1동	가좌동 104, 106, 107, 108, 111, 114, 118, 119, 136, 139~140, 142~148, 150~153, 155, 157~160, 162~164, 166, 167, 173, 178, 180, 223, 560, 561, 562, 564, 566, 567, 570, 571, 573, 574, 577~579, 580, 581, 583, 585, 587, 590~592, 602
			가좌2동	가좌동 2, 4, 4-1~4-4, 4-6~4-20, 57, 11~14, 16, 18, 19, 30, 42, 43, 46, 68~71, 75~82, 134, 217, 218~222, 224, 226~236, 237, 238~243, 245~247, 249~253, 256~257, 산21-4, 산22-3, 산23-27, 산24, 산29, 산140, 산141, 산143~145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가좌3동	가좌동 산7, 72-3~18, 76-4~5, 81, 82, 83, 84, 85, 88-3, 88, 88-4, 89, 89-2, 92, 93-1, 94-1, 94, 95, 96, 97, 97-2, 99-1, 100, 121, 122, 125, 128, 129, 171, 171-3, 174, 184, 186, 189, 192, 192-7, 193-1, 197, 199-2, 206, 206-7, 207, 207-1, 209, 210, 210-6, 212, 215, 215-3, 217, 222, 224, 224-2, 258, 259, 260, 260-1, 261-2, 262, 262-1, 263, 268, 272, 272-12, 274, 277, 278, 280, 492, 524~552, 556, 606, 606-1~18
			가좌4동	가좌동 282, 287, 289~291, 305, 306, 306-1, 308~329, 331~338, 340~342, 344~353, 359~362, 368~373, 375~380, 383, 395, 407~410, 410-10~44, 413, 445, 450, 452, 461, 463~469, 473, 475~477, 480~482, 484, 493 산174, 산199, 산20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마전동 금곡동	1	검단동	마전동 1~6,7-1~8,8,9-1~2,10~11, 11-1~2,12~16,17-1~10, 17-12,18,18-1~6,19~20, 20-1~7,21,21-1~3, 21-5~7,22~23,24-1~2, 25,25-1,26-1~10, 27-1~2,28-1,28-3~5, 28-8~15,29,30-1~5, 31~32,33-1~8,34-1~6, 35,35-1~4,36,36-1~8, 37-1~4,38,38-1~2,39~40, 41-1~5,42~43,43-1~10, 44-1~2,44-4~5,45-1~4, 46~47,47-1~11,48~49, 49-1~6,50,50-1,51,51-1~2, 52,52-1~3,53~54,54-1, 54-3~6,55,55-1~9,56, 57-1~6,58-1,59,59-1,60, 60-1,60-2~9,61,61-1~2,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62,62-1~4,63,63-1~2, 64~65,65-1~3,66-1~7,67, 67-1,68,68-1,68-3~5,69, 69-1,70~71,71-1,72,72-1~5, 73,73-1~4,74,75-1~6, 75-10~17,76-1,76-2,77, 77-1~3,78~84,84-1~4, 85-1~4,86-1~2,87-1~5, 88-1~2,89~91,92-1~2, 93,94-1~2,95~97,97-1~2, 98~99,100-1~8,101~104, 105-1~2,106~107,107-1~3, 108~109,109-1~2,110, 110-1,111,112-1~16,113-1, 114,114-1,115-1,115-3, 116,116-1,117,117-1~4, 117-6,1 17-7,118~119, 119-1,120~121,121-1,122, 122-1,123-1~5,124,124-1, 125-1~10,126-1~3,127-1~3, 128,129-1~11,129-13, 129-15~21,130-1~10,131, 131-1,131-3~5,133, 133-1~2,134~135,135-1, 136-1~2,137-1~3,138, 138-1~4,139,139-1,140, 140-1,142,143-1~2, 144-1~2,144-4,145-1~2, 146,146-1~2,147-1~2, 147-6,147-8,~13, 149,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149-1~5,150~151, 151-1~3,152~159, 160-1~6,161-1~3, 162,162-1,163,164-1~2, 165,165-1~4,166-1~2, 167-1~2,168-1~8, 169-1~2,169-4,169-6~8, 169-11~14,170-1~3, 171-1~2,172-1,173-2, 176-1~2,176-4,176-6~9, 176-13~14,177-1~3, 178-1~2,179-1,180, 180-1~6,181-1,181-7, 181-9,182,182-1~3,182-6~13, 183,185~186,186-1, 187~188,188-1,189, 189-1~20,190,190-1~8, 191~193,195-1,196,196-1~2, 197,197-1,198~199,199-1, 200-1~5,201,202-1~8, 203-1~3,204-3,205, 205-1~5,206,206-1~3,207, 207-1,208~209,210-1~4, 211~212,212-1~2,213~215, 215-1,216,216-1,217-1~3, 217-5,218-1~3,219-1~2, 220,221-1~7,222,222-1, 223-1~18,224-1~9, 225~226,226-1~4,227~230, 230-1~2,231,231-1~2,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232~233,233-1,234, 234-1,235,235-1~2, 236-1~3,236-5,237, 237-1~8,238,238-1~9, 239-1~4,240,240-3~10, 241-1~13,242-1~9, 242-11~24, 243-1~4, 243-6~8,244-1~2,244-6, 244-11,245-1~2,246-1~2, 247-1~2,248-1~2,248-4, 249,249-1~22,250,250-1, 251,251-1,252~254, 255-1~3,256~257, 257-1~20,257-22,258, 258-1,259~260,260-1~2, 261~262,262-1~3,263, 264-1~4,265~266,266-1, 267,267-1~3,268-1,268-3, 269,270-1~2,271,271-1~7, 271-8~271-9,272,273-1~5, 273-7~8,273-10~17, 274~277,277-1~2,278, 278-1~4,279,279-1~4, 280-1~8,280-12~20,281, 281-1~2,282-1~5,283-1~9, 284,284-1~2,285-1~15, 286,286-1~9,287-1~12, 287-14~15,287-20~35, 288-1~2,289,289-1~7, 290,290-1~6,290-9~14,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291,291-2~7,291-10~17, 293-2,294-2~8,295,295-1~4, 295-6~8,295-10~14,296-2, 296-4~6,297-3~6,298-2~3, 298-5~7,299-2,299-4~7, 300-2,300-4~6,301-3~8, 301-20~21,301-23~24, 302-1~6,303,304-1~3, 304-5,305-1~3,305-5~6, 306-2,307-1~6,308-1~5, 308-7,308-9~13,311, 311-1,312-1~5,313-1~2, 315,315-1~11,316,316-1~6, 316-12~16,316-19~22, 316-25~31,321-2~3, 321-16~19,326,326-1~4, 327,327-2,328,328-1, 329,329-1~4,330,330-1~4, 332-1~4,333,333-1,334, 334-1~2,334-4~9,335-1, 335-3,335-5~6,336, 336-1~4,337~338, 338-1~6,339~340,342, 342-1~8,344,344-1~3, 347-1,348,348-1~4,350~351 351-1~2,352,352-1, 352-3~13,353,353-1~27, 354-1~3,355,355-1~18, 356,356-1~13,357-1~2, 358,358-1~2,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359-8~10,360,360-1~10, 361-3,362,362-1~14, 363-3~3-5,364-1,365-1, 366-1~7,366-9~24,367, 368-1~2,368-4~13, 369-1~12,370-2,371-2, 373,373-1~14,375,375-1~37, 376,376-1~20,377, 377-1~18,379,379-2~4, 381-1,381-3~6,382~383, 383-2,384,384-1~2,384-4, 385-1~6,386-1~4,387, 387-1,388-1~4,389, 389-1~2,390,390-1~3, 391-1~6,391-8~13, 392-1~4,393,393-1~2, 394-1~2,395-1~2,395-4, 397-1~3,397-6~7, 397-9~11,398,398-1~10, 399,399-1~19,403, 403-4~6,404,404-1~3, 405,405-1,406-1,406-3, 406-6~12,407-1~6, 408-1~3,409,409-1,410, 410-1~5,411,411-2,412, 412-3~5,413-1,414-1, 414-18,414-20~23,416, 416-1~32,417,417-1~15, 419-4~6,420-2~3, 421-3~4,422-1~3,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423-1~2,424-1~6, 425~426,426-1,427~430, 431-1~7, 432~434,434-1~2, 435~438,439-1~4,440-1~4, 441-1~2,442-1~2, 443-1~3,444,444-1~30, 445,445-1~33,446, 446-1~46,447-2~3, 448-2~8,449-2~5, 450-1~8,451-1,452, 452-1~2,453-1~2, 454-1~5,455~456, 456-1~3,457,458-1~2, 458-5~8,459-1,459-2, 459-3,459-4~5,459-7~9, 460-1~,460-5~7,460-9~10, 460-11~15,461-1~2,462-1~3, 652,652-1~16,652-18~22, 653-1,653-3~4,654-1, 654-3,655,655-1~2,657, 657-2~11,658-2,659, 659-4,660-1~3,660-6~7, 660-12~57,661-1~7, 662-1~5,663-1~4, 664-1~3,664-8~18,665, 665-1~4,666~667,667-1, 667-4,667-8~9,667-13, 667-17,667-20, 667-22~25, 668-2,669,670-1,671, 671-1~3,672,672-1~6,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672-8,672-10~13,673, 673-3~4,674,675-1~4, 676-1~2,676-5~10,677,677-1, 678-1~6,678-10~13,678-15, 678-18~21,678-23~25, 678-27~30,678-32, 678-35~40, 679-1,679-3,679-5~6, 679-8~12,680-1~2, 680-4~5,681-1~6,681-8~9, 682~683,683-1~4, 683-8~11,684,684-1~4, 685,685-1~4,685-6,685-8, 685-10~11,685-13, 685-15~24,685-26~33, 685-36~48,686,686-1~5, 686-7~9,686-11~16, 686-18~37,686-39~45, 686-48~50,686-52~53, 686-56,686-60~70, 686-76~84, 686-86~87, 686-89~110, 686-113, 686-118~121,686-127~135, 686-137,686-140~141, 686-144~145,686-147, 686-149,686-151,686-154, 686-155~156,686-157~160, 686-161~165,686-168, 687-2,688-1~2,688-4, 688-7~9, 689-2~3,689-5, 689-7~8,690,690-1~6,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690-8~11,690-13~18, 690-19~44,690-48~50, 690-52~60,690-62, 690-65,690-67,690-69~82, 690-85~87,690-89~98, 690-100,690-103,690-107, 690-109, 690-110~114, 690-117~122, 690-125, 690-127, 690-131~148, 690-150, 690-153~156, 690-158, 690-160, 690-162, 690-164~167, 690-169~170, 690-174, 690-182, 690-189, 690-191~193,690-196~197, 690-203~,207,690-209~210, 690-212~213,690-216~226, 690-228,690-230, 690-232, 690-234~243,690-246~247, 690-251~256,690-258, 690-261~264,690-267~268, 690-270,690-276~277, 690-279,690-281~290, 690-292,690-295~298, 691, 691-2~3,691-5~8, 691-10~12,691-14, 691-16~20,691-22~25, 691-28~30,691-34~43, 692-1~3,692-5,692-8~10, 692-18~31,693-1~13,693-15,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693-19~25,693-28~31, 694-1~2,694-4~8,694-10~23, 694-25~37,695-1~7, 696-1~16,697-1~2, 697-4~26,697-32,697-34, 697-36,697-42~61,698-1~4, 698-6~7,698-9~16,698-19, 698-22,698-24~26, 698-28~31,699-1~3, 699-6~7,699-14,700-1~2, 700-4,702,702-2~5, 703~704,704-1~6,705,705-3, 705-5~16,714,714-2~3, 714-5~7,715,715-1,716, 716-1, 717, 717-1,718~720,720-1~3, 721,721-1, 722-1,723~724, 724-2,724-8, 724-15, 724-17,724-19,724-25~54, 725~726,726-1~4, 727, 727-1~2,728,728-1~9, 729~732,732-1,733~734, 734-1~6,735,735-1, 736~738,738-1~2,738-5, 739~740,740-3,741~753, 753-1,754,754-1~3,755, 755-1,756,756-1~2,757~758, 758-1,759,759-1,760, 760-1~2,762,764,764-1, 765,765-1~2,766,766-1, 767,767-1, 768, 768-1~4,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769~773,773-1,774, 774-1~4,775~787,787-1, 788,788-1~2,789~793, 794-1~2,795,798~810, 810-1~3,811,811-1, 812~814,814-1,815~818, 818-1,819~820,820-1, 821,821-1~2,822, 822-1~2,823,823-1~7, 824~825,825-1~2,826, 826-1~3,827,829~832, 832-1~2,833,833-1,834, 834-1,835~837,837-1~3, 838~842,844~845, 845-1~2,846~849,849-1~3, 850~854,854-1~2,855~860, 860-2,861,861-2,862~863, 863-1,864~867,867-1~3, 878,878-1,879,879-1~2, 880,880-1,881,881-1, 882,882-1,883~884,884-1, 885,885-1,886~892, 산1,산1-2,산2~산3, 산3-1~8,산5,산5-1~4, 산5-6~15,산6,산7-1~5, 산7-7,산7-9~18,산8,산8-1, 산9,산10-1~3,산12, 산14-1~11,산14-13~15, 산15,산16-1~8,산17-1~7, 산18~산20,산20-1~2,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산21~산22,산22-1,산23, 산24-1~2,산24-4~5,산25, 산26-1~3,산27,산28-1~9, 산29,산29-1~2,산30,산30-1, 산31-1~11,산32-1~4, 산33-1,산33-3~4,산33-7~25, 산34-1~5,산35-2,산35-5~7, 산36-1,산37-1,산37-3,산38, 산39-1,산39-3~18,산40, 산40-1~4,산41,산43, 산43-1~7,산43-9~33,산44, 산44-1,산45-1~19,산46, 산46-1~5,산48~산49, 산51-1~8,산52-1~2,산54, 산55-1,산55-3~4,산56-2, 산57~산58,산59-1,산59-3~4, 산60,산60-1~2,산63~산66, 산66-1,산67,산67-1, 산68-1~4,산69~산70, 산70-1~4,산71,산71-1, 산72-1,산72-3~5,산72-7, 산72-9~11,산73,산73-1, 산74,산74-1,산75~산76, 산76-1,산77~산80, 산80-1~4,산83,산83-1~2, 산84~산85,산85-2~33, 산86~산87,산87-1,산89, 산89-1,산90~산91, 산91-4~15,산92-1~15,산93, 산93-1~4,산94,산94-1,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산95,산95-1,산96-1~9, 산97-1,산97-3,산98-1, 산98-3,산99,산99-1~2, 산100,산100-1,산101-1~3, 산101-6,산101-7~8,산102-22, 산102-24~26,산103-2~4, 산103-6,산103-11~16, 산104-1~2,산104-4,산105-1, 산105-3~5,산106-1, 산107-1,산109-1~2, 산110-1~3,산111,산111-1, 산112,산112-1~7, 산112-9~14,산112-17~22, 산113-1~2,산113-4~5, 산113-7,산113-9~12, 산113-19,산113-21~36, 산114~산115,산117-2~3, 산118,산118-1~2,산119-1~3, 산119-5~6,산119-8~11, 산119-13~15,산119-17, 산120-1,산120-4~8, 산120-10~16, 산121-1~5,산122, 산122-1~2,산123, 산123-1,산124, 산125-1~5,산126-1~2, 산126-4~9,산140-5~7, 산140-15,산140-20, 산140-22,산140-25~26, 산141-3~4,산142-2,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산143-2,산143-4, 산144-1~2,산146-1, 산147,산147-2~6, 산150,산150-1~3, 산153-2,산154-2, 산156-2~3, 산157-2~5,산209-2, 산211-2,산212-2, 산213-2,산216~산218, 산218-1,산219~산220, 산220-1,산221, 산221-1, 산222~산223, 산223-1,산224, 산224-1,산225, 산225-1~2, 산226,산226-1, 산226-2 금곡동 일원
	불로동 대곡동 원당동	1	불로대곡동	- 불로동 일원, 대곡동 일원 - 검단신도시 3단계 구간 중 이음대로 북측 원당동 원당동 627-1~627-3, 627-9(일부), 628(일부), 629-1~629-2, 630, 631, 631-1~631-4, 632, 633, 634-1~634-6, 635-1~635-2, 636-1~636-2, 636-3(일부), 636-4~636-6, 636-9(일부), 636-10~636-13, 636-14~636-16(일부)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p>원당동 637-1, 637-3, 637-4(일부), 637-6(일부), 640-7~640-8(일부), 640-12(일부), 640-32(일부), 649(일부), 650, 651-1, 651-3~651-37, 652(일부), 653(일부), 782-6(일부), 783-3(일부), 784(일부), 784-1~784-2(일부), 793, 산32, 산33, 산34(일부), 산35(일부), 산40-7(일부), 산102-6(일부) 산103-7(일부), 산105-1(일부), 산106-1~산106-3(일부), 산107-1, 산107-2, 산108-1, 산109-1~산1092, 산110-1, 산111-1~산111-3, 산111-5~산111-6, 산111-11, 산111-12(일부), 산111-13~산111-24, 산111-31, 산111-32~산111-33(일부), 산111-38~산111-39, 산111-42, 산111-43(일부), 산111-45(일부), 산111-47(일부), 산136</p>
	<p>당하동 원당동</p>	1	원당동	<p>당하동 1, 2-1, 2-2, 2-4, 2-5, 2-7, 3-1, 3-5, 3-7, 3-9 ~ 3-12, 4, 4-3, 5, 5-5, 8-1, 12-2, 12-4, 17-6, 17-8, 17-1, 19-1, 21, 53, 54, 57, 57-3 ~ 57-10, 57-13, 60, 60-1, 61, 61-1 ~ 61-6, 61-8 ~ 61-11, 62, 62-1, 62-3, 62-5 ~ 62-13, 62-15, 63, 63-3, 71-6, 71-7, 74, 76-3, 76-4, 77, 78-1, 78-2, 79-1 ~ 79-11, 79-13, 80, 80-1, 81-1 ~ 81-3, 82-1 ~ 82-3, 83-1, 84-1 ~ 84-5, 85-1, 85-2, 86, 87-1 ~ 87-8, 88, 89-1 ~ 89-5, 89-7 ~ 89-10, 90-1 ~ 90-5, 91-1, 91-2, 92-1 ~ 92-5, 93-1 ~ 93-5, 94-1 ~ 94-3, 95, 95-1 ~ 95-5, 96, 96-1 ~ 96-7, 97 ~ 111, 99-1 ~ 99-5, 102-1, 102-3, 102-4, 112-1 ~ 112-5, 113, 113-1, 114, 115, 115-1, 116-1 ~ 116-3, 117-1, 117-3 ~ 117-6, 118,</p>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당하동 118-1 ~ 118-7, 119, 120, 122, 122-1, 122-3, 122-5 ~ 122-7, 123, 123-1, 123-3 ~ 123-5, 125, 133-1, 133-3, 188, 214-2, 214-3, 215-1, 215-5, 215-7, 216-2, 216-3, 218, 218-1, 219, 220-1 ~ 220-3, 221-1 ~ 221-4, 223-1, 223-5 ~ 223-7, 223-12, 223-13, 225 ~ 227, 228-1, 228-3, 229, 229-1, 230-1, 230-3, 230-5, 231-1, 231-3, 233-1 ~ 233-3, 234, 235-1 ~ 235-3, 236, 237, 237-1 ~ 237-9, 237-4 ~ 237-9, 238 ~ 241, 241-1, 243, 247, 248-1, 248-3, 249-1, 250-1, 250-2, 323-1, 323-3, 391, 491-2, 491-3, 626, 626-2 ~ 626-5, 639-1, 639-2, 640-1, 640-2, 641, 641-1, 642, 643, 644-2, 645, 645-1, 646-1, 646-3, 650, 651, 652-2, 653-1 ~ 653-5, 654, 654-1, 654-2, 655, 655-1, 655-3, 656-1 ~ 656-3, 659-1 ~ 659-5, 660-4, 661-12, 662-1 ~ 662-3, 663, 663-2, 664, 665, 665-1 ~ 665-4, 666, 666-1, 666-2, 667 ~ 670, 671-1, 671-4, 671-7 ~ 671-10, 672-1 ~ 672-3, 672-5 ~ 672-8, 673, 674-1 ~ 674-4, 675 ~ 678, 679-1, 679-2, 679-3, 680-1, 681-1, 681-2, 682, 683-1, 683-2, 684, 685-1, 685-2, 685-3, 686-1 ~ 686-3, 687, 689-1, 689-3, 690, 690-1 ~ 690-3, 691-1 ~ 691-5, 692-2 ~ 692-4, 693, 693-1 ~ 693-6, 695-1, 695-2, 696-1 ~ 696-7, 697-1 ~ 697-3, 698-1, 699, 699-1 ~ 699-10, 700, 701, 701-1 ~ 701-4, 701-6 ~ 701-18, 702, 702-1, 702-3 ~ 702-7, 703-1 ~ 703-7, 704, 704-1 ~ 704-3, 705-1 ~ 705-6, 706-1 ~ 706-3, 707-1, 707-2, 707-5, 707-6, 708, 708-2, 708-3, 709-2, 710, 710-2 ~ 710-5, 711 ~ 713, 713-2 ~ 713-4, 714-1, 714-2, 715, 716, 716-1, 717, 717-4, 717-5, 718, 719-4, 719-5, 720-2, 720-3, 721-1, 721-4, 722, 724, 724-1, 725-1, 726, 726-1, 726-2, 726-5 ~ 726-8, 726-11 ~ 726-32, 727-2, 727-5 ~ 727-8,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당하동 원당동		원당동	당하동 728, 728-1, 728-3, 728-4, 729, 729-2, 729-5, 729-8, 729-9, 730, 730-1, 732, 732-1, 733-1 ~ 733-7, 734-1, 734-4 ~ 734-12, 735-1 ~ 735-8, 735-10 ~ 735-14, 736-1, 736-2, 737-1, 737-2, 738, 739-1, 740-1 ~ 740-5, 740-6, 741-1 ~ 741-9, 742-1, 743-1, 743-5, 743-6, 744, 744-1, 744-2, 744-5, 745-2, 745-3, 746-1, 746-3 ~ 746-9, 747, 747-3, 748-1 ~ 748-3, 748-6, 748-7, 748-9, 749-1 ~ 749-8, 749-12, 749-13, 749-15 ~ 749-29, 749-31 ~ 749-38, 750-1 ~ 750-3, 750-5, 750-6, 750-10 ~ 750-22, 751-1, 752, 964-16 ~ 964-18, 981-2, 983-3, 984-1, 985-1, 988, 989, 989-1 ~ 989-12, 990, 990-1 ~ 990-4, 991, 996-1, 996-3, 997, 997-1, 998, 1019-1 ~ 1019-5, 1020-1 ~ 1020-9, 1021-1 ~ 1021-8, 1022, 1022-1, 1023, 1023-1 ~ 1023-5, 1024, 1025, 1025-1 ~ 1025-11, 1026, 1026-1 ~ 1026-13, 1027-1 ~ 1027-3, 1027-14 ~ 1027-19, 1028-1 ~ 1028-24, 1029-1 ~ 1029-10, 1030-1 ~ 1030-9, 1031, 1031-1, 1032, 1033-1, 1033-2, 1033-3, 1033-5 ~ 1033-10, 1034-1 ~ 1034-4, 1035, 1036-1, 1036-2, 1037-1 ~ 1037-6, 1038-1 ~ 1038-6, 1039-1 ~ 1039-16, 1040, 1040-1 ~ 1040-3, 1042-1 ~ 1042-4, 1043-1 ~ 1043-9, 1044-1 ~ 1044-12, 1045-1, 1045-13, 1046-1 ~ 1046-4, 1047-1 ~ 1047-6, 1048-1 ~ 1048-11, 1049 ~ 1061, 1061-1, 1062, 1064, 산41-2, 산48 ~ 산50, 산51-1, 산52, 산53-1, 산54, 산54-1, 산55-4, 산55-5, 산55-11, 산68-1, 산69 ~ 산73, 산74-1, 산74-2, 산75, 산75-1, 산76, 산77-1, 산78, 산79-2, 산80-1, 산81, 산83, 산84, 산85-1, 산87, 산89, 산92-1, 산92-2, 산92-4, 산93, 산93-2 ~ 산93-9, 산94, 산94-2, 산100-5, 산100-6,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당하동 원당동		원당동	<p>당하동 산100-9 ~ 산100-12, 산100-15, 산100-16, 산100-18, 산100-19, 산100-21 ~ 산100-26, 산103, 산103-2 ~ 산103-5, 산104, 산105-5, 산105-7, 산105-9, 산105-13, 산105-17, 산105-20, 산105-26 ~ 산105-29, 산106-1, 산107, 산107-1, 산108-1 ~ 산108-5, 산109-1, 산110-1, 산113-2, 산114, 산114-2 ~ 산114-6, 산115, 산115-2, 산115-3, 산115-5, 산116-3 ~ 산116-5, 산117-1 ~ 산117-3, 산117-6, 산118-1 ~ 산118-4, 산118-6, 산118-10, 산118-12 ~ 산118-14, 산119, 산120, 산120-3, 산120-6, 산122, 산122-2, 산125, 산125-1, 산125-2, 산125-7 ~ 산125-9, 산125-14 ~ 산125-16, 산127, 산127-7, 산129-3, 산132-1, 산132-7, 산135, 산135-3, 산136, 산136-1, 산136-2, 산138-1 ~ 산138-3, 산139-1 ~ 산139-3, 산139-4, 산140, 산141, 산141-1, 산142 ~ 산145, 산145-1, 산145-3 ~ 산145-14, 산147-1 ~ 산147-3, 산147-5, 산147-7, 산147-8, 산147-11, 산149, 산149-1, 산149-2, 산150, 산150-2, 산151-1, 산151-3, 산154-1 ~ 산154-5, 산176, 산177, 산177-1, 산177-7 ~ 산177-9</p> <p>원당동 567, 567-1, 567-3, 568-3, 568-4, 568-6, 569, 572-8, 573-8, 579-2, 579-3, 599, 599-2, 599-3, 600, 600-1, 600-2, 600-3, 601, 602-1 ~ 602-4, 603-1 ~ 603-7, 604, 612, 612-1, 613, 613-1, 613-2 ~ 613-7, 614, 615, 616, 616-2, 617-1 ~ 617-3, 625-1, 626-1, 626-2, 626-3, 626-5 ~ 626-7, 627-4 ~ 627-6, 627-9(일부), 628(일부), 636-3(일부), 636-9(일부), 636-14 ~ 636-16(일부), 637-4(일부), 637-5, 637-6(일부),</p>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당하동 원당동		원당동	원당동 639, 640-2, 640-5 ~ 640-6, 640-7 ~ 640-8(일부), 640-9 ~ 640-11, 640-12(일부), 640-13, 640-16 ~ 640-29, 640-32(일부), 641-1, 641-2, 641-5, 641-6, 643-1, 643-8 ~ 643-12, 644, 645, 645-2 ~ 645-8, 648, 648-1, 648-3, 648-4, 649(일부), 652(일부), 653(일부), 654, 654-1, 655, 655-2, 655-3, 656, 656-2 ~ 656-4, 656-6 ~ 656-10, 656-12 ~ 656-15, 656-24 ~ 656-30, 656-32 ~ 656-38, 683-1 ~ 683-4, 735, 736, 736-1~736-4, 737-1, 778-1, 778-4, 778-5, 778-7 ~ 778-10, 782, 782-1, 782-2, 782-4, 782-5, 782-6(일부), 783, 783-3(일부), 784(일부), 784-1 ~ 784-2(일부), 790, 795-1 ~ 795-7, 796-1 ~ 796-19, 797-1 ~ 797-13, 798-1 ~ 798-9, 799-1 ~ 799-6, 800-1 ~ 800-10, 801, 802-1 ~ 802-8, 803-1 ~ 803-13, 804-1 ~ 804-5, 805-1 ~ 805-6, 806-1 ~ 806-7, 807-1 ~ 807-5, 808-1 ~ 808-15, 809, 810-1 ~ 810-14, 811-1 ~ 811-12, 812-1 ~ 812-10, 812-13, 813-1, 813-2, 814-1 ~ 814-12, 815-1 ~ 815-10, 816, 816-1 ~ 816-10, 817-1, 817-5 ~ 817-11, 818-1 ~ 818-6, 819-1, 819-2, 820-1 ~ 820-11, 821-1 ~ 821-14, 822-1 ~ 822-15, 823-1 ~ 823-6, 824-1 ~ 824-14, 825-1 ~ 825-16, 826-1 ~ 826-3, 827-1 ~ 827-9, 828-1 ~ 828-8, 829-1 ~ 829-10, 830-1 ~ 830-3, 831-1 ~ 831-13, 832-1 ~ 832-11, 833-1 ~ 833-14, 834-1 ~ 834-7, 835-1 ~ 835-10, 836-1 ~ 836-5, 837-1 ~ 837-12, 838-1 ~ 838-14, 839-1 ~ 839-3, 840-1 ~ 840-6, 840-8 ~ 840-11, 841-1 ~ 841-7, 842, 842-1 ~ 842-5, 843-1 ~ 843-6,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당하동 원당동		원당동	원당동 844-1 ~ 844-5, 845-1 ~ 845-9, 846-1 ~ 846-6, 847-1 ~ 847-10, 848-1 ~ 848-7, 848-9, 849, 849-1, 850-1, 850-2, 851-1 ~ 851-6, 852-1~ 852-3, 853-1 ~ 853-8, 854-1, 854-2, 854-3 ~ 854-7, 854-9 ~ 854-16, 855-1 ~ 855-7, 856, 856-1 ~ 856-4, 857, 857-1 ~ 857-3, 858 ~ 901, 887-1, 887-2, 산40-4, 산89-4, 산90, 산95-1,산95-6, 산95-7, 산98-2, 산98-7, 산102-4, 산102-5, 산103-1~ 산103-3, 산103-7(일부), 산104 ~ 산106, 산105-1(일부), 산106-1 ~ 산106-3(일부), 산111-7 ~ 산111-8, 산111-10, 산111-12(일부), 산111-30, 산111-32 ~ 산111-33(일부), 산111-34 ~ 산111-35, 산111-43(일부), 산111-45(일부), 산111-47(일부), 산113, 산113-3, 산114, 산114-3, 산116, 산117-1~ 산117-4, 산118, 산118-2, 산124, 산125-1, 산125-2, 산125-5, 산125-6, 산126-2, 산126-3, 산135
	마전동 당하동	1	당하동	마전동 518-7, 520-5, 521-11, 521-13~14, 521-15, 521-79, 521-21~22, 521-26, 522-1~5, 523, 524, 524-1~3, 524-5, 524-7~9, 524-10~16, 524-18~20, 525-1~3, 526, 526-1~2, 526-4, 526-6~7, 527, 527-1~4, 528, 529, 529-1~2, 529-4, 529-6~11, 530, 530-1, 531, 531-1~2, 532, 532-1~6, 533, 533-1, 534, 534-1~8, 535-1,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p>535-3~7, 536-1, 536-3~5, 537, 537-1, 538-1, 539, 540, 540-1~7, 540-9~11, 541~543, 543-1, 544, 544-1~3, 545-1~4, 545-6~13, 545-15~17, 545-27~29, 546-1~2, 546-5~6, 616, 616-1, 616-6, 628, 628-4, 629, 629-1~2, 629-4~5, 629-16~17, 629-19, 629-22~28, 710, 710-2~3, 711~712, 산168-1~15, 산169, 산170-4, 산170-8, 산170-13, 산181-1, 산181-14, 산181-17, 산196-1~2, 산196-5, 산196-7, 산196-15, 산196-17, 산196-19~20, 산196-23, 산196-23, 산196-25~29, 산197-1, 산197-5-10, 산198, 산198-1, 산199-1, 산199-3, 산199-5~10, 산200, 산200-1, 산201-1~2, 산202, 산203-1, 산203-3~5, 산204-1~2, 산204-4</p> <p>당하동 748-4~5, 748-8~9, 750-7, 750-20, 753~757, 759-1~4, 760, 760-1, 761, 761-1~6, 762-1~4, 763, 763-1, 764, 765-1~41, 766~768, 768-1~2, 769, 769-1~2, 770, 770-1~5, 771, 771-1~2, 772, 772-1~7, 773~774, 774-1~2, 775, 775-2~8, 776, 776-1~2, 777, 777-1~6, 778-1~2, 779, 779-1~9, 780~781, 781-1~2, 781-4~7, 781-9, 782-2, 783, 783-2~3, 786, 786-1, 787, 787-1~2, 788, 788-1, 789, 789-1~4, 789-6, 790~791, 792-1~3, 793~7, 797-1~5, 798, 798-1, 799, 800-3~4, 800-6, 803, 803-1, 805, 805-1, 806~807,</p>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807-1~2, 808-1~2, 809~12, 813-1~2, 814~818, 819-1~2, 819-4~5, 820-1~6, 820-9~12, 821~823, 823-1~3, 824, 827-1~3, 827-5 827-7, 827-9, 828, 828-2~6, 828-8, 828-11, 829-1~2, 829-5~6, 829-9~10, 830, 830-2, 831, 831-1~6, 832-1, 832-4~11, 833-1~3, 834, 834-1~5, 834-8, 834-11~24, 835-1, 835-3~6, 835-9~15, 836-1~3, 836-7~8, 836-11~14, 837, 837-2~4, 838-1~3, 838-5~6, 838-9, 839, 839-6, 840-1, 840-5~6, 840-8, 840-13~17, 841, 841-3, 842-2, 843~844, 844-2~14, 846-1~5, 846-6~8, 847-1~6, 848-1, 848-4, 848-6, 848-8, 849-1~3, 849-6~7, 850-1, 850-4~7, 851, 851-1~3, 851-6, 851-10~12, 851-16~22, 851-29~32, 853-1, 853-5, 854-1, 854-3, 854-5~6, 855, 857-2~3, 858-5, 859, 859-1, 859-4~5, 859-7, 860~863, 863-1, 872-4, 876-1, 876-4~5, 877-2~4, 877-6, 878, 880-5, 880-8, 880-11, 882, 883-5~10, 883-15~18, 883-25, 888-9, 895-1, 910-3~4, 942-20~21, 943, 943-2~3, 943-5, 943-7, 943-14, 943-16~17, 943-25~44, 943-47~54, 943-58~60, 955-4, 955-6, 955-8~12, 955-14~17, 955-20, 955-27, 956-1~28, 957, 957-1~8, 957-10~18, 957-20~23,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957-30~31, 958, 958-1~4, 958-6, 958-8~11, 958-13, 958-17~19, 958-23~26, 958-31~34, 958-39~42, 958-45~46, 958-48, 958-50~58, 958-60~61, 958-64~68, 959, 959-1, 960, 960-1~2, 960-4, 961, 961-1, 962, 962-1~6, 999, 1001, 1001-1, 1002, 1002-1, 1003, 1003-1~5, 1003-9, 1004-1~4, 1005, 1005-1, 1005-4, 1006~1007, 1007-1~2, 1007-5~6, 1019~1020, 1065-1~6, 1066-1~5, 1067-1, 1067-4~5, 1068~1074, 1075-1~9, 1075-21, 1076-1~3, 1077-1~16, 1078-1, 1078-4~8, 1079-1~9, 1080-1, 1080-12~20, 1080-24~28, 1081-1~8, 1082-1~12, 1083-1~16, 1084-1~14, 1085-1~11, 1086-1~10, 1087-1~24, 1088-1~3, 1089-1~11, 1090-1, 1090-6, 1091-1~7, 1092-1~21, 1093-1~6, 1094-1~4, 1095-1~7, 1096-1~4, 1097-1~15, 1098-1~12, 1099-1~4, 1100-1~10, 1101-1~15, 1102-1~5, 1103-1~2, 1104-1~3, 1105-1~4, 1106-1~13, 1107-1~10, 1108-1~12, 1109-1~11, 1110-1~17, 1111-1~8, 1111-10~12, 1112-1~2, 1113-1~6, 1114-1~6, 1115-1~8, 1116~1140, 산101-1, 산102-1, 산102-3~5, 산118-5, 산121-1, 산122-1, 산152-1, 산152-6~8, 산155, 산157, 산160, 산161-1~47, 산161-49~55, 산162-1, 산162-3~39,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1	오류왕길동	산164, 산164-3, 산165, 산170, 산172-1~3, 산172-8~12, 산172-14, 산174-8~9, 산174-13, 산176, 산178-1~4, 산179-1, 산179-3~6, 산181, 산181-2~3, 산182, 산182-1, 산183-2, 산183-4~5, 산185-1, 산185-4, 산185-6, 산185-8~9, 산186-3, 산189-4, 산189-7, 산192-1, 산192-3, 산192-8, 산192-10, 산193, 산194, 산195-6, 산196-1, 산196-3~5, 산197-1, 산202-6, 산203-1, 산203-3, 산211-7, 산213-2, 산213-6, 산213-12, 산214-1, 산217-2, 산217-13, 산217-17, 산218-1~2, 산220-산221, 산221-1, 산221-3, 산221-5, 산222-7, 산225, 산226-1~3, 산228, 산228-1~4, 산230, 산234-8, 산234-44
		1	마전동	오류동 일원, 왕길동 일원
	오류동 왕길동 마전동			마전동 463, 463-2~3, 463-7~16, 464, 464-1~2, 464-4~7, 465, 465-1~6, 466-1~9, 467, 467-1~2, 468, 468-1~3, 469-1~21, 470-1~2, 470-4~6, 470-10~15, 470-17~19, 473, 497-1, 497-3, 499, 499-1, 499-3~4, 499-9, 500~503, 503-2, 504, 505-1~3, 506, 506-1, 507, 508-1~4, 509-1~2, 510~512, 512-1~4, 513, 513-1~4, 514, 514-1~2, 515, 515-1~12,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515-14~32, 515-40, 515-42~44, 515-46~47, 516, 516-1~23, 517, 517-1~8, 517-10, 517-16, 518, 518-1, 518-3~4, 520-1, 520-3, 520-6, 626-22~24, 626-42, 628-3, 629-1, 631, 631-1, 632-1, 632-4~23, 639-39~41, 639-47, 639-81~83, 639-85~87, 646, 646-1, 646-3, 646-9, 705-4, 706, 709, 710-4, 713, 713-1~4, 713-16, 713-19~31, 999-1~25, 1000-1~12, 1001-1~7, 1002-1~18, 1003-1~2, 1004, 1005-1~24, 1006-1~17, 1007-1~11, 1008-1~12, 1009-1~8, 1010-1~5, 1011-1~3, 1012-1~2, 1013~1014, 1015-1~6, 1016-1~10, 1017-1~5, 1018-1~4, 1019, 1020-1~15, 1021-1~7, 1022-1~8, 1023, 1024-1~18, 1025-1~20, 1026-1~7, 1027-1~5, 1028-1~16, 1029-1~2, 1029-5~7, 1030-1~3, 1031-1~6, 1053-1~4, 1054-1~7, 1055-1~3, 1056-1~7, 1057-1~7, 1058-1~5, 1059-1~15, 1060-1~10, 1061-1~9, 1062-1~9, 1063-1~13, 1064-1~5, 1065-1-4, 1066-1~8, 1067~1070, 1075, 1083~1115, 1116-1~2, 1117, 산101-4, 산102-12, 산103-5, 산103-9~10, 산108-1, 산120-17, 산127, 산128, 산128-1~6, 산128-8~13, 산129-2, 산129-4, 산129-11, 산129-14, 산129-17~18, 산129-24~27, 산140-27~28, 산146-8,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산158, 산158-2~4, 산158-9, 산159-1~2, 산159-4, 산159-6~11, 산159-13, 산159-16~18, 산159-20, 산160-13, 산163~산164, 산164-1, 산165-1~4, 산166, 산174-1~2, 산175-1~8, 산175-10~11, 산176-1, 산176-4~5, 산176-10, 산177-1, 산178-1~2, 산178-7, 산179-1~8, 산 180-1~8, 산181-6, 산185-7~10, 산1 86-1, 산186-5~6, 산186-8~10, 산18 7-1~7, 산188-1, 산188-4, 산194-1~2, 산194-4,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당하동 원당동	1	아라동	<p>당하동 【검단신도시 1단계 지역】 159, 339, 339-1~2, 347, 348-1, 350-1~2, 350-4~7, 350-14~18, 351, 351-1~6, 402, 1228, 1229, 1229-1~17, 1230, 1231, 1231-1~8, 1232, 1233, 1233-1~4, 1234, 1235, 1235-1~13, 1236, 1237, 1237-1~4, 1238, 1239, 1240, 1241, 1241-1~4, 1242, 1243, 1243-1~3, 1244, 1245, 1246, 1246-1~10, 1247, 1248, 1248-1~2, 1249, 1250, 1250-1~2, 1251, 1252, 1253, 1254, 1254-1, 1255, 1256, 1256-1~11, 1257, 1258, 1258-1~12, 1259, 1260, 1260-1~12, 1261, 1261-1~12, 1262, 1262-1~9, 1263, 1264, 1264-1~8, 1265, 1266, 1267, 1267-1~5, 1268, 1269, 1269-1~6, 1270, 1271, 1272, 1272-1~9, 1273, 1274, 1275, 1276, 1276-1~3, 1277, 1278, 1278-1, 1279, 1280, 1280-1~11, 1281, 1282, 1282-1~12, 1283, 1284, 1284-1~13, 1285, 1286, 1286-1~18, 1287, 1288, 1288-1~6, 1289, 1290, 1290-1~11, 1291, 1292, 1292-1~11, 1293, 1294, 1295, 1295-1~9, 1296, 1297, 1297-1~11, 1298, 1299, 1299-1~8, 1300, 1300-1~8, 1301, 1302, 1303, 1304, 1304-1, 1305, 1305-1, 1306, 1307, 1308, 1308-1, 1309, 1310, 1310-1, 1311, 1311-1, 1312, 1312-1~7, 1313, 1314, 1314-1~3, 1315, 1316, 1316-1~7, 1317, 1318, 1318-1~9, 1319</p> <p>【검단신도시 1단계 지역 외】 454-1~3, 454-6~7, 455-1~3, 455-5~6, 456-1~17, 456-19, 456-23~31, 457-1~4, 457-6~7, 457-11, 458-1~10, 458-13~15, 459-1, 459-3~4, 459-7~9, 462-6~7, 473-4, 473-6~9, 474-9, 474-12~13,</p>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당하동 원당동	1	아라동	<p>당하동 475-6, 475-8~9, 476-7, 476-9, 477-18, 477-20~21, 478-3~4, 491, 491-1, 491-4~7, 492, 493, 494, 494-1, 494-3~4, 495-3, 495-5, 496, 496-4~5, 497-4~5, 496-4~5, 497-4~5, 594-3~4, 595, 596-1, 597-2, 598-1, 601-1, 602, 603-1, 603-4, 603-6~7, 604, 605-1, 606-1, 607-5~6, 609-2, 609-5~6, 610-1, 610-4~5, 610-7~8, 611-1, 611-3~5, 612-1~8, 613, 613-1~4, 615, 615-1, 616, 616-1, 617-1, 618-1, 619-1, 620, 621-1, 622, 623, 624-1~4, 625-1~8, 625-10~15, 626, 626-1~4, 627, 627-1, 628, 629, 630, 631-1~3, 632, 633-1, 633-6~8, 646-5~7, 648, 648-1, 649-1~4, 650, 650-1, 651, 651-2, 655-1~3, 656-1~3, 658-1~8, 658-18~19, 660-1, 660-6~7, 661-5, 661-16, 661-23~25, 964-28, 966-2, 979-1, 980-1, 988, 991-2, 992, 993, 994, 995, 산28-1, 산29-2~3, 산30-2, 산32-1~2, 산33-1, 산34, 산35-4, 산35-5, 산46-1, 산111-3</p> <p>원당동 【검단신도시 1단계 지역】 544, 547-1, 547-3~6, 548-2~3, 549, 551-7, 555, 555-3, 556-1, 557-2, 557-4, 557-6, 557-10~11, 745-10, 745-12~13, 756-1, 954, 955, 956, 957, 986, 986-1, 987, 987-1~2, 988, 988-1, 989, 989-1~10, 990, 991, 991-1~18, 992, 993, 993-1~14, 994, 995, 995-1~4, 996, 997, 997-1~10, 998, 999, 1000, 1000-1~28, 1001, 1002, 1003, 1003-1~5, 1004, 1005, 1005-1~14, 1006, 1007, 1008, 1008-1~7,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6-1~5, 1017, 1018, 1018-1~3, 1019, 1020, 1020-1~8, 1021, 1022,</p>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당하동 원당동		아라동	<p>원당동 1022-1, 1023, 1024, 1025, 1026, 1026-1, 1027, 1028, 1028-1~2, 1029, 1030, 1030-1~12, 1031, 1032, 1033, 1033-1~12, 1034, 1035, 1035-1~5, 1036, 1037, 1038, 1038-1~2, 1039, 1040, 1040-1~5, 1041, 1041-1~14, 1042, 1043, 1043-1~14, 1044, 1045, 1045-1~8, 1046, 1047, 1047-1~4, 1048, 1048-1~11, 1049, 1050, 1050-1~7, 1051, 1052, 1052-1~9, 1053, 1054, 1055, 1055-1~2, 1056, 1056-1~12, 1057, 1058, 1059, 1059-1~2, 1060, 1061, 1061-1, 1062, 1063, 1063-1~3, 1064, 1065, 1065-1~6, 1066, 1067, 1067-1~29, 1068, 1069, 1069-1~6, 1070, 1071, 1071-1~11, 1072, 1073, 1073-1~3, 1074, 1075, 1075-1~7, 1076, 1077, 1077-1~5, 1078, 1079, 1079-1~3, 1080, 1081, 1081-1, 1082, 1082-1~3, 1083, 1084, 1084-1, 1085, 1086, 1086-1~3, 1087, 1088, 1088-1~7, 1089, 1090, 1090-1~4, 1091, 1092, 1092-1, 1093, 1094, 1094-1~6, 산82-1, 산82-5, 산82-10, 산83-2, 산83-9, 산86-7,</p> <p>【검단신도시 1단계 지역 외】 2-1, 2-4, 2-5~9, 2-11~15, 3, 3-1~3, 5, 5-1~10, 5-13~16, 6, 6-1~3, 8, 8-1~3, 10, 10-1~7, 11, 11-2~6, 12-2~7, 15-2~8, 16-3~11, 17-2~5, 17-7~9, 25-4, 26-1~5, 26-7~11, 26-14, 62, 62-4, 62-6, 62-8~10, 62-12~13, 62-16, 62-18, 62-19~20, 63, 63-2~11, 65-3~5, 66-2~3, 67-2, 68-2~3, 69-2~3, 71-2~3, 71-5~7, 73, 73-1~2, 79, 79-1~3,</p>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당하동 월당동		아라동	월당동 81-2, 81-4, 81-6, 178-3, 264, 265, 266, 267-1, 271-3, 272, 273, 273-1, 274, 275, 276-1~3, 276-5~8, 277-1, 278-1~2, 278-5, 283-1, 284-1, 285-1~5, 288-1~6, 288-8~10, 288-12~13, 288-17, 288-19~20, 288-22~24, 290-2~5, 291-2, 291-4~5, 292-2~5, 294-2~3, 296-1~2, 297-2~5, 298-1, 298-3, 329-6~9, 330-8~10, 336-1~3, 336-5, 337, 337-2~4, 337-6~9, 338-3~4, 339-4~6, 339-9, 363-5, 365-1, 365-3, 365-5, 365-7, 365-9~10, 365-12~13, 366-4~5, 367-10, 375-1, 375-3~4, 375-8, 375-10, 377-1~2, 377-5~7, 377-10, 377-13~14, 377-16, 378-1~7, 379-7, 486, 486-1, 486-6~7, 486-9, 486-11, 486-13, 486-23, 486-31, 486-33~40, 509-2~3, 509-8, 509-11~12, 539-38~40, 579-3, 743-14, 744-1, 745-3, 산34(일부) , 산35(일부) , 산36, 산40-4, 산40-7(일부) , 산46-1, 산94, 산95-1, 산95-6~7, 산98-1~2, 산98-7, 산102-4, 산102-6(일부) , 산105-1(일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5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1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서구분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서구분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구정모니터링 활동 등 구정홍보 사업
2.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3. 구정 발전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4. 구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5. 그 밖에 구정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정산보고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4년 5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14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1호 중 “5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일”을 “15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일”을 “25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0일”을 “25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⑫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8조제2항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일수는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받을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5. 그 밖에 동별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2. 자녀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4. 문화, 관광, 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
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등의 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방안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견 청취)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 전문가, 구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종교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3.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고용된 사람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 1. 환경교육 홍보를 위한 홍보물, 기념품 제공
- 2.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
- 3. 그 밖에 환경교육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홍보 및 표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발굴·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시설”이란 청년공간 및 청년지원센터는 물론 청년창업·청년일자리 등 청년과 관련한 목적별 청년 특화시설 등 청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일체를 일컫는다.
3.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공간으로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년서비스 제공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청년시설의 구분 및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② 청년시설은 지역적 특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시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청년시설의 조성 및 운영

④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년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

며,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기능) 청년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과 이벤트 추진
2.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창업 정보 공유와 교육 및 컨설팅
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회의, 커뮤니티 활동 등 네트워킹 등을 위한 소통공간 제공
5. 창작, 협업,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공간 제공
6. 그 밖에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협의체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시설 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청년시설 사업의 발굴 및 운영에 대한 사항
2. 청년시설 활성화 방안 모색
3. 청년정책 관련 정보 교류
4. 그 밖에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

② 협의체는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청년시설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청년

정책위원회”라 한다) 청년위원장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참여단장

4. 청년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관내 유관기관 실무자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회의는 협의체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⑧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시설 운영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⑨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프로그램 수강료 등)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1.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구청장은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는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수강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예를 따른다.

1. 강의 개시 전일까지 수강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수강취소를 한 경우(전액반환)

2. 수강료가 과오납 된 경우

3. 수강신청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강사 또는 강의 장소 등의 원인으로 수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사용허가 등) ① 청년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2. 제1호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③ 신청하는 자가 경합할 때는 제2항제1호를 우선한다.

④ 사용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인 경우

제10조(대여) ① 청년시설의 물품 대여는 제8조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며 물품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② 대여한 물품은 시설 내에서 운영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미디어실의 촬영장비에 대하여 외부 유출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최대 5일을 대여할 수 있다.
- ④ 물품 대여신청자가 경합할 때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변상조치) 사용기간 중에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 및 물품 등을 손상 또는 파괴하거나 분실한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멤버십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 활성화 및 청년정책의 홍보를 위해 멤버십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멤버십 마일리지 사용은 청년시설 및 청년시설 프로그램에서만 가능하다.

- ② 멤버십 가입 대상자는 청년으로 한정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사업 참여자 등 청년시설 및 청년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멤버십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멤버십 가입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멤버십 회원 대상 청년정책 정보
2. 청년시설 행사 및 이벤트 참여 우선권
3. 청년시설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청년정책 및 청년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멤버십 마일리지 적립도가 우수한 청년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인식 확산과 청년시설 활성화를 위해 간행물 또는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이벤트에 참여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홍보 방법 및 홍보 물품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청년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년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년시설의 구분과 명칭 및 위치(제3조제1항 관련)

구분	명칭	위치
청년공간	청년센터 서구1939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94번길 19, 6층

[별표 2]

청년시설 프로그램 참여자의 지원 기준(제6조제3항 관련)

구분	분야	지원내용	지원횟수 및 금액
청년 공간	역량강화	자립에 필요한 법률상담	1인당 연 5회 미만, 50만원 이내
		역량강화 프로그램	1인당 연 1회 30만원 이내
		청년 강사 양성과정 (강사료, 소모성 물품구입비, 진행비, 홍보비 등)	1인당 연 1회 50만원 이내
	문화·예술 건강	정신건강관련 상담 (화상상담 포 합)	1인당 연 4회 미만, 40만원 이내
		문화·예술 프로그램	1인당(건당) 5만원 이내
		건강 프로그램	1인당(건당) 10만원 이내
	네트워킹 및 활동 지원	소모임 활동비 (강사료, 소모성 물품구입비, 진행비, 홍보비 등)	3인 이상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 팀당 60만원 이내
		미래알 정책실험 프로젝트	프로젝트 당 200만원 이내
		간담회 또는 좌담회 등	식비 또는 다과비 지급 (매식비 기준 단가)
		활동지원 프로그램	1인당(건당) 10만원 이내

[별표 3]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기준 (제12조제4항 관련)

구분	항목		마일리지 범위	1일 제공(사용) 한도	비고
청년 공간	적립	청년센터 서구1939 출석	500점 이내	-	1일 1회
		청년센터 서구1939 홍보 (공간 및 프로그램)	2,000점 이내	4,000점 이내	
		멤버십 친구 추천	2,000점 이내	4,000점 이내	본인 멤버십 가입 당일 친구추천 인정 불가
	사용	커피 1회 이용권	500점 이내	멤버십 한도 내	
		굿즈 교환	20,000점 이내	20,000점 이내	개당 3,000원 범위 내의 굿즈
		청년참여확대 및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참여	40,000점 이내	40,000점 이내	

[별표 4]

홍보방법 및 홍보수단 등의 세부기준 (제13조제2항 관련)

홍보 방법	시기	대상	홍보 물품	지급 기준	제공 액수 한도 (1회당)	
					1인당	총액
공모전	연 2회 이하	참여자	서구사랑상품권 (경품) 또는 굿즈	수상자 및 참가자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SNS 이벤트	연 12회 이하	참여자	서구사랑상품권 (경품) 또는 굿즈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홍보이벤트 참여자	2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시설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감정노동 사용자”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공기관의 장

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다. 서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

라. 공공기관과 공사, 용역 및 그 밖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마. 그 밖의 감정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그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

5. “고객”이란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노동환경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이하 “스트레스”라 한다) 및 건강장해 예방과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노동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 기본 방향, 업무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 목표, 실행계획, 소요 재원
2. 감정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감정노동자의 건강장해, 사고 현황 및 그 예방
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 준수 및 고위험 직군 보호
5.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등 노동자 단체, 사용자단체, 민간 단체, 정부 기관 등과의 협력
6.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와 사고 현황 및 그 예방에 관한 사항
7. 휴일·휴가 및 노동시간 등 감정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8.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호,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인식개선
9.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해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소속 감정노동자에 대한 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는 가이드라인, 모범 매뉴얼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은 인권, 노동, 젠더, 직업의학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을 감정노동 권리보장 분야의 시민단체, 노동단체 또는 국내외기구 등에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및 잦은 이직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구에 있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전문기관에서 감정노동자가 상담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기관별 매뉴얼 작성 의무) ① 공공기관은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자를 인격 주체로서 배려하는 내용의 기관별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기관별 매뉴얼에는 지침을 기본으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기관별 매뉴얼을 전체 노동자에게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감정노동자에게는 별도 배포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5조 제1항의 시행 원칙에 따라 구청장에게 기관별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에 필요하여 제안한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감정노동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인권, 노동, 젠더, 직업의학, 노동법 등의 분야 전문가, 이 분야에 소속되어 지식이 있거나 연구,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서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정노동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이하 “권리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정노동 권리보장위원회 결정 사항의 집행
2.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3.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감정노동자 또는 작업장 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5. 지침 및 기관별 매뉴얼의 작성 검토 및 개선을 위한 연구
6. 감정노동 완화를 위한 직무 여건 개선 정책 연구 및 보급
7.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항

② 구청장은 권리보호센터의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

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감정노동자 상담 및 작업장 내 폭력으로 인한 심리 및 정서 지원 상담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이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의 실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매뉴얼 작성,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의 부착 등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감정근로자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5.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 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6. “관리인”이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6조의5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 건물 중에서 감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의 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제5조(감독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독 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따라 사무에 관하여 보고 받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을 이행하지 못 할 경우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감독사항에 관한 검토) ① 구청장은 사무 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법 제26조의5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감독의 중지 등) 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인에게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결과의 통보) 구청장은 감독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도개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 또는 성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2. 지역사회에 특화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3.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다.

제8조(영양·식생활 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및 철도 역사 등 공공장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에

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나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역비로 편성되는 경비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의회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5.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prism)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입법과 정책개발을 위해 적절히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감독할 책무를 진다.

제4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의원 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과제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의원연구단체 별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차등적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과업내용·수행기간·비용 등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활동,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6조(과제의 선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의원정책개발 연

구용역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에서 발표된 연구 중 발주 용역과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구정에 적용 가능한 연구결과물의 존재 여부(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2. 구정 관련 각종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 관련 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연구용역 결과 활용방안
4. 용역 수행기관의 연구 전문성
5. 용역비 사용 등의 적정성

제7조(결과의 평가) 위원회는 용역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연구목표의 달성도
2. 연구추진방법의 적절성
3. 계약 내용에 대한 충실성
4.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 결과(정책연구관리시스템 검색,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유사도 검사 및 그 밖의 상용화된 표절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사 결과를 말한다)
5.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6. 용역비 사용 등의 적정성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연구용역 준공 전 유사도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유사도 검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의장은 해당 연구용역 수행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고 지출된 의원정책개발비 환수 등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관리) ① 총괄부서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연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연구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총괄부서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가 선정되면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주관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의 공개) ① 총괄부서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연구용역 결과 및 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용역의 결과 및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 및 증가산금을”을 “납부지연가산세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를 “(정리보류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 한”을 “정리보류를 한”으로, “결손처분을 취소”를 “정리보류를 취소”로 한다.

제18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21조 중 “영 제74조의2제5항”을 “영 제91조의11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지연가산세 적용례)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font-size: 2em;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input type="checkbox"/> 부과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style="color: red;" type="checkbox"/> 정리보류 <input style="color: red;" type="checkbox"/> 시효완성정리 </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left: 10px;">]</div> </div> <div style="margin-left: 20px; font-size: 1.5em; font-weight: bold;">결정결의서</div>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 통지 체 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항	결정내용	지방세 (가산세 포함)	가산금	계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W)				
납세인원	시 구 번길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인)
				등재 환급금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지방세 (가산세 포함)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갑)]

(뒤 쪽)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3호서식]

인천광역시서구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채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세 포함)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끝.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 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표 5]

녹청자박물관 사무위임 전결처리 사항(제26조와 관련)

부 문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구 분			
		담 당	실 장	관 장	수탁기관장
	1. 지시사항 가. 구청장·수탁기관장 지시사항 및 결과보고 나. 추진사항 자료취합			○	○
	2.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안건결정 및 소집에 관한 사항 나. 의결사항 및 기본방침이 확정된 사항의 시행 다. 위원 위·해촉 라. 일정통보 마. 운영경비의 지출 등			○ ○ ○ ○	○ ○ ○
	3. 구의회 관련업무 가. 요구목록 작성 나. 질의답변 자료 제출			○	○
	4. 복 무 가. 관내출장, 조퇴, 외출, 초과근무명령 (1) 관장 (2) 정규직 직원 (3) 무기계약직 직원 나. 관외출장, 연가 및 휴가 (1) 관장 (2) 정규직 직원 (3) 무기계약직 직원			○ ○ ○ ○ ○ ○ ○	○
	5. 직원임용(채용, 승진, 휴직, 복직, 직위 해제, 면직 등)				○
	6. 호봉승급			○	
	7. 회의 소집 가. 직원회의 나. 업무담당자 회의		○	○	
	8.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가. 연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나.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시행 다.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의			○ ○	○
	9. 사무 인계·인수 사항 가. 관장 나. 관장이하 직원			○	○

부 문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구 분			
		담 당	실장	관장	수탁기관장
	10. 직원의 업무분장			○	
	11. 기 타				
	가. 소속직원의 배치			○	
	나.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사역			○	
	다. 물품 관리 및 보관	○			
	라. 도서구입 및 정기간행물 구독			○	
	마. 각종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안) 결정			○	
	바. 각종 일지 및 대장정리			○	
	사. 보안점검 및 확인	○			
	12. 민원처리				
	가. 청원·진정·건의서 접수 및 처리(5인이상)				○
	나. 청원·진정·건의서 접수 및 처리(4인이하)			○	
	다. 일반 민원(청원·진정·건의서 제외) 및 인터넷 민원처리			○	
	13. 규정·공고, 고시 및 질의				
	가. 정관·규정·내규의 제정과 개폐요구 및 고시				○
	나. 결정사항 이행			○	
	다. 공고문, 광고문의 게시	○			
	라. 공고문의 시행			○	
	마. 소관업무에 관한 법령해석의 질의			○	
	바. 규정집 정비	○			
	사. 규정집 입안 및 승인요청			○	
	14. 공 사				
	가. 공사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1,000만원 이상)				○
	나. 공사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1,000만원 미만)			○	
	다. 공사착공 명령과 감독	○			
	라. 공사감독관 지정			○	
	마. 착공계 및 준공계 처리			○	
	바. 공사감독일지 및 인부점검	○			
	사. 공사하자 보수명령			○	
	아. 공사기간 연기명령			○	
	자. 공사의 중지 및 해지명령			○	
	차. (관급)자재 수불	○			
	15. 검수 및 검사				
	가. 공사, 용역, 제조, 물품의 검수 및 검사	○			
	나. 검수(검사)관 임명			○	
	다. 관급자재의 검사	○			
	16.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가.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 수립(1,000만원 이상)				○
	나.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 수립(1,000만원 미만)			○	
	다. 유지보수 점검표 작성	○			
	라. 분야별 시설관리 및 계획				
	(1) 운영계획(건축, 소방, 전기, 기계, 조경, CCTV 등)			○	
	(2) 기계실, 전기실, 소방, 가스, CCTV 등 점검일지	○			

부 문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구 분			
		담 당	실장	관장	수탁기관장
	17. 박물관 안전관리				
	가. 연간 안전관리 종합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나. 계절별 안전관리 시행			○	
	다. 분기별 안전관리 시행			○	
	라. 특별 안전관리 시행			○	
	마. 안전점검 일지		○		
	18. 프로그램 운영				
	가. 수강생 모집 공고			○	
	나. 수강생 설문조사			○	
	다. 프로그램 개발			○	
	라. 수강생 관리		○		
	마. 등록신청서 발급		○		
	바. 강의실 운영		○		
	사. 가마운영		○		
	아. 공모(사업) 신청 및 발굴			○	
	19. 전시실 운영				
	가. 연간 전시 계획수립				○
	나. 특별기획전 계획수립				○
	다. 유물관리		○		
	라. 수장고관리		○		
	20. 예산				
	가. 예산(안) 작성				○
	나. 예산안 감독부서 협의			○	
	다. 예산전용 및 승인요구			○	
	라. 분기별 민간위탁금 신청			○	
	21. 회계관리				
	가. 예산집행 품의 1,000만원 이상 (인건비, 공공요금 및 수수료 제외)				○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수수료 제외 모든 예산집행 품의				
	나. 예산집행 품의 1,000만원 미만 (인건비, 공공요금 및 수수료 포함)			○	
	다. 지출 및 지급명령			○	
	라. 증빙서류의 보관		○		
	마. 수입금 수납 및 납부 관리		○		
	바. 월별수입 및 지출현황 관리		○		
	사. 세입예산의 징수결정			○	
	22. 세입세출예산의 정리 및 결산				
	가. 세출(입) 결산보고				○
	나. 지출결산 증빙			○	
	23. 재물조사			○	

부 문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구 분			
		담 당	실장	관 장	수탁기관장
	24. 공무원 인력관리				
	가. 인력채용				○
	나. 근무상황관리		○		
	다. 재계약관리				○
	25. 홍 보				
	가. 홍보계획 수립			○	
	나. 각종 보도자료 관리			○	
	다. 해명, 인터뷰자료 관리			○	
	26. 후생복지				
	가. 급여 및 직원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나.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	
	다. 보험료 납부 및 신고			○	
	라. 산재 신청 및 관련서류 신고 등			○	
	27. 문서심사				
	가. 문서 등록대장		○		
	나. 문서 접수대장		○		
	다. 문서 발송		○		
	28. 문서접수				
	가. 문서접수의 분류		○		
	나. 문서 발송 및 우편물 대장 정리		○		
	29. 공인관리				
	가. 공인의 신조(개각 및 폐기)				○
	나. 공인관계 대장 기록유지 보존		○		
	다. 인영부 기록		○		
	라. 공인사전날인 및 인영인쇄 사용승인 신청			○	
	30. 물품취득처분 및 운영관리				
	가. 물품수급 관리계획 및 불용결정			○	
	나. 물품보관 및 출납			○	
	다. 유물 수복, 매입, 매각, 폐기(1,000만원 이상)				○
	라. 유물 수복, 매입, 매각, 폐기(1,000만원 미만)			○	

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쓰레기봉투 판매 지정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판매소주소			
판매소구분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

(뒷면)

판매자 준수사항

1.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쓰레기봉투 판매지정서, 표시판 및 판매가격표를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게시)하여야 한다.
 2. 불법 쓰레기봉투를 진열 및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쓰레기봉투는 포장단위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 요청시 날개로 판매하여야 한다.
 4. 구매자의 환불요구 시 즉시 판매가로 환불하여야 한다.
 5. 판매소에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최소 1주일 예상판매량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판매인의 명의(승계)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일 10일 전 판매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또한, 판매인(대표자)의 사고, 그 밖의 사유로 휴·폐업하고자 할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판매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쓰레기봉투 수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위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9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5.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231번길 9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 5. 13.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4-5-13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49-7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231번길 9 (오류동)	20090922	단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684-25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481-1 (금곡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3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77-1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 204 (검암동)	20090922	도로인근에 녹청자 도요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분할) 고시조서

고시일 : 2024-5-13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548 (가정동)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548 (가정동)	주소사용 불편 (옆집과 같은 주소로 불편)	20090922	천일염을 생산하던 마을이 있던 곳을 통과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548 (가정동)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548-1 (가정동)	주소사용 불편 (옆집과 같은 주소로 불편)	20090922	천일염을 생산하던 마을이 있던 곳을 통과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989호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신설) 입안(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4. 5. 1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가. 공간시설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공원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A	가좌 공원	어린이 공원	가좌동 산5-1번지 일원	-	증) 5,539	5,539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내 용	사 유
A	공원	○공원 신설 (면적 : 5,539㎡)	· 시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의견제출: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서면 제출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본관4층 (도시계획과, 032-560-4762)

○ 인천광역시 서구청 제2청사 4층 (공원과, 032-560-4492)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의견서

일시	2024. 5. .
성명	
주소	※ 회신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연락처	※ 회신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도시계획 변경사항	도시계획시설(시설:공원) 결정(신설) 입안(안)
의견사항	
※ 의견사항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